

의안번호	제 224 호
의결연월일	2005. 3. 29

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5. 5. 4.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5. 6.

다. 상 정 일 자 : 2005. 5. 13.

제123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위원회

2. 제안설명요지(재무과장 : 이 명 원)

가. 제안이유

-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,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구 분		당 초			변 경			
		건 수	수 량	추정가액	건 수	수 량	추정가액	
취 득	계	토지	25	95,104	367,532	25	95,104	367,532
		건물	4	3,350	3,100,000	4	3,350	3,100,000
		기타				1	5	128,943
	매입	토지	25	95,104	367,532	25	95,104	367,532
		건물	4	3,350	3,100,000	4	3,350	3,100,000
		기타				1	5	128,943
	교환	토지						
		건물						
		기타						
처 분	계	토지						
		건물						
		기타						
	매각	토지						
		건물						
		기타						
	교환	토지						
		건물						
		기타						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정진영)

-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안면도국제해양개발(주)에서
우리군 덕산면에 건설 중인 덕산 스파캐슬 콘도 회원권을 매입하여
- 군 산하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 및 출향인사와 중앙부처·도
공무원들과의 대화의 장으로 활용 국·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
우리군 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사료되나
-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도 충분히 예측가능 하였던 사항인 만큼
앞으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
사료됨.

4. 질의·답변요지

○ 생략

5. 토론요지

○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